

정약용 사도 요한의 종부성사

-정약용 ‘補儒論信者’로 종부성사를 받고 선종하다-
보 유 론 신자

2019. 9. 26. 김학렬 若望 신부.
약 망

1-1. 다산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로서(若望) 병자성사를 받고 선종하였다. 정약용 요한은 한 때 심약한 배교자였으나, 회개하고 보속하다가 천주교 신앙인으로 선종하였으니,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귀양이 풀려 돌아온 뒤 1), 정약용 요한은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모든 교회 본분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1801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입으로 배반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쳐 세상과 떨어져 살며, 거의 언제나 방에 들어앉아 몇몇 친구들 밖에

1) 귀양에서 풀려 돌아온(1818년) 2,3년 뒤라고,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 (Daveluy, Notes), p. 340에서 적고 있다./= Jean deux ou trois ans après son retour d'exil avait repris la pratique de la religion.(Daveluy (4) 판독, p. 340).

는 만나지 않았다. 그는 자주 大齋_{대제}를 지키고, 그밖에 여러 가지 克己_{극기}를 행하며 몹시 아픈 쇠사슬 허리띠를 만들어 띠고 한 번도 그것을 끌러 놓지 않았다. 그는 자주 오랫동안 默想_{묵상}을 하였다. 정약용 요한은 그의 묵상의 일부를 적어놓았고, 또 外教_{외교}인들의 미신을 반박하고 新入敎友_{신입 교우}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은, 여러 가지 다른 서적들을 남겼다. 그의 저서 여러 권이 박해 때에 땅 속에 감추어졌다가 벌레에 갇혀 먹히고 썩고 하였으나, 많은 저서가 그의 집안에 보존되었다. 완전히 복권이 된 뒤에도 정 요한은 생활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아니하였고, 날로 더해가는 그의 열심은 전에 그가 배교함으로 인하여 나쁜 모범을 보였던 모든 신자들을 기쁘게 하고 감화시켰다. 정 요한은 1835년 유방제(=여항덕) 빠치피꼬 신부가 조선에 들어온 뒤 (1834.1. - 1836년 12월), 그의 손으로 마지막 성사를 받은 후 세상을 떠났다.

정 약용 요한의 이야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여 말해야 할 것은, 그의 아들 홍 유산은 2) 재능과 학식이 매우 뛰어

2) 최석우 신부의 주석 : 다블뤼 비망기에도 홍 유산으로 나온다. '홍'을 '정'의 오식으로 보고 정 西山_{유 산}으로 해석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 西山_{유 산}은 정약용의 장자 학연의 호였다./ Hong iou san, fils de Jean, ne pratiqua pas d'abord la religion et la crainte l'en rendait même ennemi.

난 사람이었는데, 천주교를 자기 가족이 당한 모든 불행의 원
 인이라고 비난하며, 오랫동안 몹시 멀리하다가 마침내 회개하
 여 죽기 몇 해 전에 성세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 약용 요한의
 누이 하나는, 1801년 박해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야기한 일이
 있는 채제공 재상의 며느리였다. 이 여자는 16세에 과부가 되
 어 슬프고 외로운 일생을 외교인만 사는 시가에서 보냈다. 마
 침내 이 여자는 노경에 이르러 다행히도 신앙을 얻게 되었고,
 1851년에는 本國人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몰래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 그에게 모든 聖事를 줄 수가 있었
 다.” 3)

1-2. 정약용에게 마지막 성사(終傳聖事)를 준 유방제

신부는 양력으로 1834년 1월에 입국하였는데, 포르투갈
 선교보호권 소속의 북경교구 (11대 Peres Pereyra 교
 구장 지시 하의 유방제 신부) 와 조선 대목구를 담당하
 는 파리외방선교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조선 대목구

(Daveluy (4) 판독, p. 341).

3)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중, 1987 한국천주교회사 연구소 p. 185
 - 186 ; Daveluy, Notes, p. 341./Il mourut en 1835 après avoir
 reçu les sacrements de la main du P. Pacifique.

의 부주교 역할을 맡았던 모방 나신부에 의해 성무집행 정지와 더불어 추방조치를 받게 되었다. 4) 이 조치에 의하여 유방제 신부는 1836년 12월 3일에 3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한양을 출발하였고, 5) 이후 변문에서 사스탕 정신부를 만나 교대하게 되었다. 6)

2. 그러나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아래와 같이 유방제 신부의 추방조치에 대한 시간 계산 착오를 일으킴으로써, 다산 정약용의 병자성사를 부정하려고 한다.

2-1. 김상홍은 <종부성사론의 반론>에서, ‘유방제 신부는 1836년 양력 4월 4일 이전에 서울을 떠나 산서성 고향집으로 출발하였다.’ 고 추정하는 우를 범한다.

4)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중, 338~339쪽의 註 32와 34 참조.

5) 달레 중 281 각주 1에 의하면, (일성록 헌종 5년(1839) 8월 7일), 유방제 신부의 입국은 양력으로 1834년 1월 3일에 변문을 떠나 16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Prop.:SO 1833-1840, f.197). 그러므로 유신부의 조선 체류기간은 거의 만 3년에 이른다.

6) 일성록 1839.8.7. 죄인 정 아각백(샤스탕)의 진술,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1997 한국교회사연구소, 243.

‘ 다산에게 종부성사를 거행하였다는 중국인 유방제 신부는 주문모 신부 후임으로 1833년 말에 조선에 들어왔으나, 스캔들로 인하여 1836년 조선을 떠난 사람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다산은 1836년 결혼 60주년일인 2월 22일(양력4월 7일), 75세로 향리에서 운명하였다. 유방제 신부는 1836년 양력 4월 4일 이전에 서울을 떠나 산서성 고향집으로 출발하였다. 즉 다산이 운명하기 3일 이전에 서울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다산이 운명하기 3일 전인 4월 4일 이전에, 우리나라를 떠난 그가 어떻게 4월 7일에 운명한 다산에게 종부성사를 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그가 4월 7일 辰時初刻 (7시초)에 운명한 다산에게 종부성사를 행했다는 주장은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김상홍, 다산학 연구, 1990 계명문화사, p.46-48).

2-2. 원재연의 2012년 논문 발표에 대한, 김상홍의 토론문을 다음 주소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유방제 신부는 적어도 다산이 운명하기 3일 전인 4월 4일 이전에 떠났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4월 7일에 운명한 다산에게 종부성사를 의식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 라며 반복 주장을 한다.

[http://pds.catholic.or.kr/pds/bbs_view.asp?num=7
&id=162893&PSIZE=10&searchkey=C&searchtext=%
EC%9B%90%EC%9E%AC%EC%97%B0+%EB%8B%A4
%EC%82%B0+%EC%A0%95%EC%95%BD%EC%9A%A
9%EA%B3%BC+%EC%84%9C%ED%95%99&menu=48](http://pds.catholic.or.kr/pds/bbs_view.asp?num=7&id=162893&PSIZE=10&searchkey=C&searchtext=%EC%9B%90%EC%9E%AC%EC%97%B0+%EB%8B%A4%EC%82%B0+%EC%A0%95%EC%95%BD%EC%9A%A9%EA%B3%BC+%EC%84%9C%ED%95%99&menu=48)

17 [교회사 연구 제39집, 2012년 12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이러한 원재연의 발표에 대해, 김상홍은 토론문 1
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약용이 종부성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 넷째, 다산이 종부성사를 받고 운명했다는 주장과,
다산에게 종부성사를 행했다는 중국인 劉方濟 신부가 중국으로
쫓겨 간 날짜 문제이다.

유방제 신부는 “唾棄할 만한 不道德으로 자기의 司祭職

을 공공연하게 더럽혔기” 때문에 모방(Maubant) 신부는 布敎地의 長으로서 교황청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聖務停止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 각주 15).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中, 338~339쪽.).

다산은 결혼 60주년 回婚日인 1836년 음력 2월 22일(양력 4월 7일)에 향년 75세로 운명했다. 모방 신부가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낸 1836년 4월 4일(양력)자 서한과, 4월 6일(양력)자 布敎聖省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방제 신부의 스캔들과 이에 따른 성무집행 정지 조치에 관해 상세히 보고한 기록에 따르면 “모든 이에게 버림을 받은 劉(方濟) 신부는 이리 저리 미룬 끝에” 1836년 양력 4월 4일 이전에 서울에서 중국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 각주 16). 《한국천주교회사》中, 338~339쪽의 註 32와 34. 다산에게 종부성사를 행했다는 중국인 유방제 신부는 周文謨 신부 후임으로 1833년 말에 조선에 들어왔으나 스캔들로 인하여 1836년 양력 4월 4일 이전에 조선을 떠나 山西省의 고향으로 향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방제 신부는 적어도 다산이 운명하기 3일 전인 4월 4일 이전에 떠났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4월 7일에 운명한 다산에게 종부성사를 의식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다산은 운명하기 3일 전에 결혼 60년을 회상한 回耄詩를

썼고 가족들이 回婚式을 준비할 정도로 건강했다. 이런 다산이 4월 4일 이전에 성무집행 정지를 당하고 쫓겨난 유방제 신부에게 종부성사 의식을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발표자(원재연)는 註 114에서, “한편 유방제 신부가 조선을 출국한 것은 교회 측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4월 4일이 아니라, 그해(1836) 12월 초 중국(마카오)으로 유학가던 김대건 등 3소년과 함께 간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증빙하는 1836년 11월 29일자로 조선에서 쓴 유방제 신부의 라틴어 편지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와, 모방 신부의 1836년 4월 4일(양력)자 서한과, 4월 6일(양력)자 서한은 모두 신빙성이 없는 책과 서한이 된다. >>

2-3. 위의 밑줄친 문장에서, 김상홍은 우선해야 할 모방 신부의 편지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방 신부가 조치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유방제 신부의 추방계획과 실제적 추방실행이라는 시간의 퍼즐을, 김상홍은 정확하게 끼워 맞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달레의 《한

국천주교회사》와, 모방 신부의 1836년 4월 4일(양력)자 서한과, 4월 6일(양력)자 서한은 모두 신빙성이 없는 책과 서한이 된다.’며, 교회사와 관련된 기록의 신빙성을 모두 부정하고 왜곡한다.

김상홍이 앞의 2-2항 토론문 글 가운데 각주 16에서 인용한대로, 《한국천주교회사》中, 338~339쪽의 註 32와 34.을 김상홍이 읽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편향된 시각으로 원문과 각주를 짜깁기 하여 인용하였다. 각주에서 제시한 모방 신부의 편지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유방제 신부를 추방하려는 계획을 나타낸 모방신부의 편지 발신일(=1836.4.4.)을, 유방제 신부의 실제 출국일(=1836.12.3.)로 곡해한 것이다. 이는 곧 역사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시간의 오류를 범한 주장이다.

(* 필자는 아래 3항의 글에서, 모방 신부의 편지 원문을 제시하여, 김상홍의 오류가 무엇인지 밝힐 것이다.)

2-4. 김상홍은 토론문 각주 16에서 인용한 대로,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중권 339쪽까지만 읽고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조금만 더 수고하여 1장을 더 넘겨, 341쪽의 내용까지 읽고, 유방제 신부의 실제 출국일을 확인했어야, 오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341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36년 말에, 의무를 게을리한 신부(=유방제)를 국경에 까지 도로 데리고 갔던 바로 그 밀사들이, (이번에는) 조선 소년 3인을 데리고 갔는데, 7)... 이 밀사들은, 오래 전부터 조선에 들어오려고 길을 떠나 그들을 고대하고 있던 또 한 명의 선교사(=사스탕 정신부)를, 변문에서 만나 서울로 인도하였다.’

7) 이 세 소년을 국경까지 인도한 교우는 정하상과 조신철이었는데, 일행들은 이밖에도 중국으로 돌아가는 유방제 신부등 9, 10 명에 이르렀다고, 달레 중, 341쪽의 각주 1에서 밝히고 있다.

3. 김상홍이 유방제 신부의 추방과 관련하여, 먼저 확인했어야 할, 모방 신부의 1836. 4. 4.자 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 제가 유(방제) 신부에 대하여 취한 조치들이 바로 교황님과도, 교황청의 포교성성 추기경과도, 나폴리에 있는 중국인들의 (성가정) 신학교장과도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저는 마지못해서 유 신부에게 성직수행을 금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포교성성장관 추기경님께 보내드리는 편지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유들이 그 편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샤스탕 신부에게 돌아오는(1837년) 1월에 저를 도우러 오라고 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유(방제) 신부를 모시고 갈 조선 신자들이 돌아오는 길에 샤스탕 신부를 모셔오게 될 것입니다.

8) 모방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부에게 보내는 편지, 최세구 로베르 역주, < 상교우서, 2017 가을, 통권 56호 >, 수원교회사연구소, pp. 36-37.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04-1839_모방/1836-04-04_모방_신부의_서한_in_2017_가을_상교우서_vol56_38.pdf

(J'invite Mr. Chastan à venir à mon secours au mois de janvier prochain. j'envoie Les hommes coréens qui accompagneront Mr. Yu s'en retournant au ... introduiront Mr. Chastan en revenant.)

조선왕국 선교사 모방 신부 올림

1836년 4월 4일, 조선의 수도 한양.

4. 유방제 신부의 출국일(1836년 말)과 관련된 여타의 기록들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4-1. 모방 신부의 서한⁹⁾, 조선 신학교 교장 신부님께, 1836년

9)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2집, 1996 한국교회사 연구소, 43.; 상교우서 58호, 2018. 봄 수원교회사연구소, 29.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04-1839_모방/1836-12-03_모방_신부의_서한_in_2018_봄_상교우서_vol58_27.pdf

12월 2일 서울.

- 아래 서명한, 파리 외방전교회원이며 조선의 선교사이고 조선 포교지의 장상인 모방은, 경기도 남양 출신의 최야고보와 황안나의 아들 최(방제) 프란치스코, 충청도 홍주 다락골 출신의 최(양업) 토마스, 충청도 면천 솔뫼 출신의 김(대건) 안드레아로부터 규정의 이 서약을, 복음 성경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받았습니다.

베드로 필리베르토 모방 신부, 조선 선교사.

이밖에도 모방 신부가 1836.12.9.자로 프랑스 신학교 지도부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저는 이번에 4명을 변문으로 보냅니다. 이들의 임무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방제 신부와, 제가 마카오로 보내는 3명의 후보 신학생을 출국시키는 한편, 조선으로 들어오는 사스탕 신부를 조선에 밀입국시켜 서울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였다.(상교우서 2018 겨울호, 35).

이러한 계획대로, 유방제 신부는 1836.12.3.에 3명의 신학생과 함께 조선을 떠났다. 이 추방조치는 포르투갈 선교보호권에 속한 북경교구 소속이기를 바라는 유방제 신부에 대한, 교황청

직속의 조선 대목구를 담당하는 파리외방전교회 간의 관할권 다툼에서 불거진 갈등 때문이었다. 또한 파리외방전교회의 모방 신부는 중국인 신부들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으므로, 유방제 신부의 모든 처신을 비난하는 한편, 순교자 주문모 신부의 활동도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못마땅하게 여겼다. 10)

4-2. 죄인 정 아각백(사스탕)의 진술

‘제가 병신년에 나올 때(1836년 12월), 중국인 유가(=유방제 신부) 및 조선인 3명을 과연 책문에서 만나 보았는데, 각자 가는 길이 달랐으므로, 그 후의 일은 전연 알지 못합니다.’ 11)

4-3. 죄인 정하상의 진술

‘ 유가(=유방제)가 돌아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과연 이들은 3명으로, 한 명은 용인 사는 김제준의 아들 재복이고, 두 번째는 과천 사는 최영환의 아들 양업이고, 세 번째는 홍

10) 상교우서 제59호, 2018 여름 수원교회사연구소, 32 참조.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04-1839_모방/1836-12-09_모방_신부의_서한_in_2018_여름_상교우서_vol59_30.pdf ;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중, 300, 322 참조.
11) 日省錄 己亥(1839) 8월 7일 庚午, 罪人 鄭牙各伯 口招./ ...丙申(1836)年
출래 시 中國人 劉哥 及 朝鮮人 3名 果爲 逢見 於 柵 各爲 分路 其後事 全然 不知.
출래 시 중국인 유가급 조선인 3명 과 위 봉 견 어 책 각 위 분로 기후 사 전연 부지

주 사는 최가의 아우 방제입니다. 12)

5. 정약용은 탕약망(아담 샬) 신부가 지은 [主教緣起]
주교 연기

13) 통해, 補儒關佛(3권 24b)을 알았고, 선조들에게 지
보 유 벽 불

내는 제사란 폐할 수 없는 우량한 습속으로(3권 13a)
알고 그대로 실천하였다. 14)

권철신은 문초에서, 탕 약망(J. Adam Schall)의 『주교연기』
에 나오는 흙승주재지설, 삼혼지설, 사행설을 언급하며, 15) “저의 집

12) 일성록 1839.8.7. 죄인 정하상 구초,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1997 한국교회사연구소, 243 - 247.

13) 1643년에 간행되었는데, 1644년에 소현세자를 만났을 때 기증되었을 것이며, 한국천주교회 창립자들은 이 책을 읽고 보유벽불의 이론과 제사관(제사 폐지불가)을 지녔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교연기에 관해 다음 주소 참조.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78.htm>

14) 다음은 파리본 주교연기 3권 13a의 유관 본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돌아가신 先祖에게 드리는 모든 祭祀는, 살아계실 때 生者의 情으로 예를 다하여, 死者를 살아계신 分으로, 이미 돌아가신 分을 存在하는 자처럼 섬기는 禮이므로, 廢하는 것은 不可하다.(cf. 中庸 19).; 다음의 주소에 있는 소순태 교수의 논문의 제1-1항 참조: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85.htm>; 탕약망은 보유의 의미로 ‘養孫入養’까지 실행하여, 시종의 아들을 湯士弘이란 이름으로 입양하였다.

15) 矣弟自仁川 抵書矣身幹 其學之初頭所聞 虛 不可信矣 其後得看其書則其中 欽崇主宰之說 生覺靈三魂之說 火氣水土四行之說 誠有至理不可誣者須熟看

안은 제사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라며 대답하였다. 정약용도 동부승지 사직소(1797)와 선중씨 묘지명(1822)에서, ‘제사를 폐한다는 말은 신이 예전에 본 글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며, 이때는 제사지 내지 않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고 표현함으로써, 주교연기를 읽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약용을 포함하는 초기의 천주교 신자들은 주교연기를 보았고, 주교연기에 나오는 대로, 조상제사를 폐지할 수 없는 좋은 풍습으로 여기는 것이 천주교의 방침이었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에(1790년) 제사에 관한 방침이 바뀌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약용과 권철신 등의 보유론 신자들은 소신껏 ‘보유벽불과 우량한 습속의 제사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제례 문제는 교의(Dogma)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바뀔 수 있는 규정(Disciplina)의 문제로 여기며, 보유론적 (補儒關佛) 16) 신앙을 堅持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강완숙의 진술(사학징의)에서, ‘제가 항시 편지를 주고받은 곳은 정약종, 정약용, 오석충, 권철신, 문영인(폐궁 나인), 권철신의 손아래 누이(이윤하) 등의 집입

此書 然後攻之不可隨衆泛斥 故矣身亦看此書 (《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1일 권철신 공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주소에 있는 소순태 교수의 논문의 제3-3항 참조: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2.htm>

16) 주교연기 3권24b에, 주님의 가르침은 性教와 寵教를 겸하므로, 他教가 미치지 못한다. 천주강생은 降生의 가르침教이다. 이 강생의 가르침은 앞의 2교(성교와 총교)에 準備되었으나, 타교들을 초월한 다. (타교가)設令 大行하였다 해도, 補儒關佛의 功은 비교가 안된다.; 다음의 주소에 있는 소순태 교수의 논문의 제2-3항 참조: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80.htm> ; 정약용은 동부승지사직소(1797)에서, ‘변론을 펼친 글에 현혹되어 유문(儒門)의 별파로만 알았습니다.’ 고 하였다.

니다.’ 하여, 정약용이 주문모 신부와도 편지를 통하여 소통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과연 2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보유론자들의 제사관이 천주교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정약용은 해배 후 마재에서 소신껏 보유론 신자로 참회의 생활을 실천하던 중 (1818-1836), 중국인 유방제 신부가 남이관과 정하상의 안내로 조선에 입국하자(1834년 1월 16일 한양 도착),¹⁷⁾ 조카인 정하상의 권유로 종부성사를 청하여 받게 되었을 것이다. ¹⁸⁾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기록되었듯이, 정약용이 유방제 신부에게 종부성사를 받을 수 있었던 기간은, 1834년 2월부터 1836년 4월까지 2년 2개월 이상이나 되므로, 충분히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¹⁹⁾

17)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중, 295s., 309 참조.

18) 상교우서 2017년 봄 54호 참조/ 중국 신부였으므로 筆談으로 성사를 보았을 것이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04-1839_모방/1836-04-04_모방_신부의_서한_in_2017_봄_상교우서_vol54_33.pdf

19) 이석원, 1834~1836년 여항덕 신부의 조선 대목구 사목 활동· 20-21.참조./= 마재에 (Matke) 사는 70~80명의 신자가 있는데, 이로 볼 때 여항덕

7.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교회사는 교회의 신학(사정)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올바르게 해석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신학을 배우지 않은 역사가가 교회사의 자료를 다룬다 해도, 신학적인 지식 없이는 교회사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일반 역사가는 교회사를 연구할 때, 교회의 神的_{신적} 요소를 제거하고 外的_{외적} 현상만을 다룰 수 있으므로, 자칫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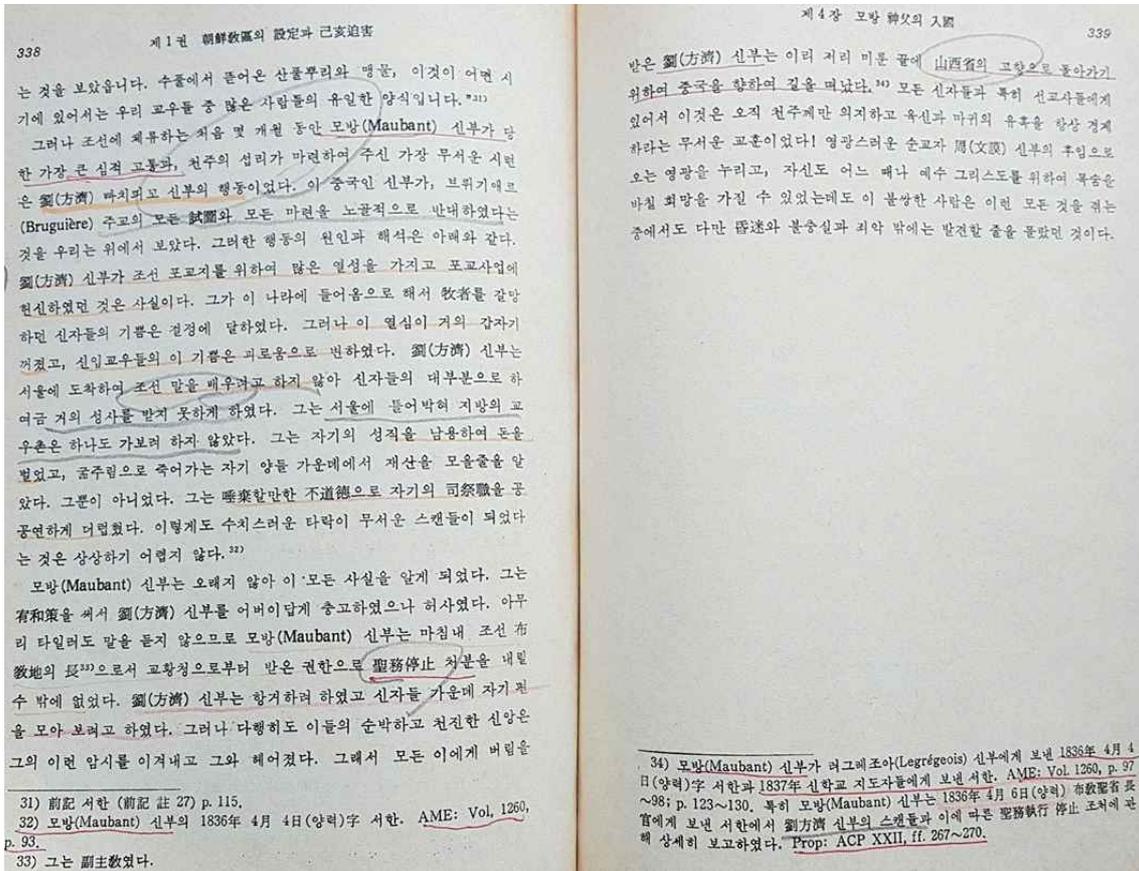
또한 교회 내의 연구자들 간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견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과 결정적인 판단은 교권

(유방제) 신부가 마재로 가서 성사를 집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1836.4.4. 모방 신부 서한, 《상교우서》 53호, 2016년 겨울호, 34쪽).

(교구장)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

끝.

첨부; 사진 3장.



20) 2007.11.20.에 수원교구 사제게시판에 올린, 용인대리구장 김학렬 신부의 글 참조.

341

제 5 장
샤스탕 (Chastan) 神父의 入國

샤스탕 (Chastan) 神父의 入國 — 조선천주교회의 상대

천주께서는 당시 사람으로 당시 종들에게 고통과 기쁨을 적당히 나누어 주신다. 천주께서는 오래지 않아 모방(Maubant) 신부에게 위로를 할까지 보내 주셨으니, 이것으로 신부는 슬픔을 잊을 수가 있었다. 1836년 말에 의무를 게을리한 신부를 국경에까지 도로 데리고 갔던 바로 그 密使를 이 이년에는 조선 소년 3인을 데리고 갔는데, 모방(Maubant) 신부는 이들이 難關에 오를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이들을 마카오에 있는 동료들에게 보내어 마카오에서나 볼로·베낭(Poulo-Pinang)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시키게 하려고 하였다. 이 密使들은, 오래 전부터 조선에 들어오려고 길을 떠나 그들을 고대하고 있던 또 한 명의 선교사를 難關에

1) 3명의 소년은 최 양년(도마), 최 방지거, 김 안드레아였다. 모방(Maubant) 신부는 임국후 곧 劉方濟 神父가 신발했다는 2명의 志願者를 알아보았으나, 공중하고 무자적 한 사합들이어서 새복을 신발에 착수하여, 우선 2명을 선정하고 나중에 1명을 추가했다. 이들은 출발할 때까지 자살에 머무르며 라틴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3월에 도착한 순서로 보면 최 양년(1836년 2월 6일(양력), 최 방지거(과추리)는 3월 14일(양력), 김 안드레아는 7월 11일(양력)이었다. 이 세 소년을 데려가는 劉方濟 한 교우부丁夏群과 趙植植이었는데 일행은 이밖에 또 중국으로 돌아가는 劉方濟 신부동행 10명에 이르렀다. 모방(Maubant) 신부는 마카오의 外邦傳敎會 經理 담당 리그레조아(Legrejois) 신부에게 이 소년들을 어디신가 교육시켜 주기를 당부했다. 약해 때문에 죽어헤지는 도저히 그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처지였다. 1836년 4월 4일(양력) 및 12월 3일(양력) 劉方濟 神父가 신발한 세 소년은 바로 金再 105~107 참조. **사실: 1837. 4. 18.**

한편 한국측 기록에 의하면 「丁夏群口招以爲突已年分 洋漢出來之前 劉趙兩軍來一福, 崔良榮, 崔方濟였다. 「丁夏群出來之後 劉哥有還歸之意 故從其願入於丙人 即彼人中邪學者 而留仕於渠家 羅哥出來之後 則羅仁居金濟俊子再福 二則果田居崔永申多……劉哥歸時 奉來我國人果居三益 而一則羅仁居金濟俊子再福 己亥年 8月 7日. 敏子良榮 三則洪州居權誠之弟方濟云」 『日省錄』 肅宗 己亥年 8月 7日.

1837

主教總起 卷三

他身投已成身抑投始胎未成之身謂投成身則彼已有魂一人一物而有二魂固無是理謂投始胎則此生彼死彼生此死生死相準人物之數亦相準而何物多于人不可紀極而物類之中鳥多于獸水族昆蟲又多于鳥不可紀極也數不相準必非彼此互投而輪迴之說之妄益著矣。

凡齋爲克已修德感格天主而齋是爲正齋自有輪迴之說乃慮禽獸或係前生長上恩人恐犯不孝不義故不敢食抑何誕哉信如此說槩不宜食夫

蔬果亦有生魂土石亦有佛性將盡不食之并盡不用不踐之而後可乎。

凡祭祖先以盡生者之情以修事死如生事亡如存之禮故不可廢而非祖先實來格來饗也祖先雖我所尊要亦人也死後必受天主賞罰設今不幸而入地獄卽據佛說勢不得來幸在天堂則福樂無極安用世食爲哉如在天想念子孫故來就食夫想念非快足意斷非享真福者之所宜有俚俗祭時焚化紙錢意或祖先貪此而來夫死尚需錢